

검 토 보 고 서

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
무상대부 동의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병준

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5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6월 4일

3. 제안이유

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내 건립 예정인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 부지의 무상대부 동의를 받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위 치 :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(오송2단지) 제한 2-1

(가지번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645번지)

나. 면 적 : 16,496m² (도와 청주시가 1/2씩 공유지분 소유)

다. 사용목적 :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을 위한 부지 무상사용

- 사용기관 : 한국세라믹기술원

- 사용기간 : 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간

라.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(대부기간) 및 제34조(대부료의 감면)

5. 검토내용

가. 무상대부 예정지 공유재산 현황

- 소재지 : (가지번)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645번지 토지 16,496㎡(계약체결일 : '19. 4. 30.)
- 사업비 : 4,878,877,440원(충북도와 청주시 각 2,438,438,720원)

나. 무상대부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본 동의안은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39조의2에¹⁾ 따라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오송에 건립 예정인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부지를 충청북도로부터 무상대부 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‘정부출연연구기관등’은 20년까지 대부가 가능하고 같은 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, 대부료 면제가 가능한 사항임.

1) 제39조의2(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) ① 세라믹 연구개발, 시험·분석·평가,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(이하 “세라믹기술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② 세라믹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시험·분석, 평가·인증, 감정, 표준화 사업
2.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, 인력양성, 기술지도사업
3. 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, 분석,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
5. 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
6. 그 밖에 세라믹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③ <생략>

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정부의 보호·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무상대부는 가능하여 법적요건은 충족된다고 판단됨.

6. 검토의견

- 「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부지 무상대부 동의안」을 검토한 결과,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,
- 무상대부에 관한 관계법령 및 제반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무상대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,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립을 통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고용증대효과 등이 기대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른 부지의 무상대부는 가능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장기간 무상대부에 따른 관리대책과 무상대부 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한 사유, 무상대부조건 그리고 대부기간 종료 후 조치계획 등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함.